

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

의안 번호	89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
나. 2023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의 추가 출연 여부에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무명 :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3) 사무내용

-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
-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

-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조사 연구 및 전시·보급
- 패션·봉제산업 지원사업
-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
- 디자인의 국·내외 교류사업
- 유니버설디자인 연구·사업 및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운영
-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운영
-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
- 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·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나. 추정개요

1) 추정예산 : 2,577,908천원

- 지정 출연금액 : 29,618,652천원, 총 출연금액 : 32,196,560천원

2) 출연금 편성 내용

- DDP 자체수입 손실분 총당 : 967,908천원(DDP 시설관리 및 시설관리인력 운영비 지원)
 -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에 따른 수입 손실분 보전 : 598,984천원
 - 시 무상사용 대관수익 감소 초과분 보전 : 278,705천원
 - 코로나19로 인한 임차 소상공인 지원 임대수익 감소분 보전 : 90,219천원
- 디자인랩 1,2층 재구성에 따른 콘텐츠 이전·구축 : 700,000천원
 - DDP 디자인스토어 이전 및 구축 : 500,000천원
 - 디자인랩 1~2층, 운영사무실 이전 및 구축 : 200,000천원
- DDP 10주년 맞이 재도약을 위한 리브랜딩 : 200,000천원
- 야외 수공간 설계 : 10,000천원
- 서울 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, 마케팅 : 700,000천원

3) 추경필요성

-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으로 DDP 수입 창출 공간이 축소되어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시설관리비 부족분 598,984천원을 출연금으로 보전
- 디자인랩 1,2층(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) 재구성에 따른 기존 콘텐츠 이전 및 구축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 필요
- '23년 예산 편성 시 행정재산의 서울시 직접 사용(대관)에 대한 DDP 사용료 미징수로 대관수익 감소 보전분을 출연금으로 편성했으나, 서울시 행사 증가로 대관료 초과분이 발생하여 자체수입 감소분에 대한 278,705천원을 출연금으로 보전
- 코로나19관련 우리시 「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」 정책에 따라, 소상공인에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하며, 이에 따라 감면한 임대 수익 손실분 90,219천원을 출연금으로 보전
- '24년 DDP 개관 10주년을 맞아 DDP를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. 이에 DDP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DDP 브랜드 개선 200,000천원 및 DDP 공원부 공간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심형 수변공간 설계비용 10,000천원을 추경 편성함
- '매력도시 서울'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 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홍보 하기 위한 예산 700,000천원 편성

다.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 개요)

- 1) 소재지 : 중구 을지로 281 (옛 동대문운동장 부지(65,232㎡))
- 2) 규 모 : 총 면적 86,574㎡, 지상 4층, 지하 3층
- 3) 개 관 : '14. 3. 21
- 4) 전경 및 위치도



5) DDP 시설 현황 : 5개 공간

공간명	면적(㎡)	시설 및 용도
아트홀	5,66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명 디자인브랜드 행사, 패션위크 등 디자인-패션 관련 행사, 국제컨퍼런스 등 ※ 아트홀1관(1,500석), 아트홀2관(1,000석), 컨퍼런스홀(200석)
뮤지엄	8,12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앤디워홀, 팀버튼 등 글로벌 작가들의 대규모 전시 등 ※ (B2) 전시1관, (2층) 전시2관, (B2~4층) 디자인둘레길
디자인랩	7,9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층 D-숲 - 시민휴식 및 기획전시, DDP 스토어 - 소상공인 176개 입점 • 2층) 서울-온(2층) - 市 화상 스튜디오, 오픈라운지 - 멤버십 공간 • 3층) 디자인 쇼룸 - 유니버설디자인, NFT 갤러리 매거진 라이브러리 - 디자인-패션 서적 구비 등 디자인 라키비움 • 4층) 잔디사랑방 - 중소규모 행사
DDP 마켓	5,4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BtheB(SBA 운영), 식음료 매장 및 동대문 상권 팝업스토어
공 원	4,1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이서울 쇼룸, 갤러리문 전시장(해외대사관 및 문화원 협력 전시 등) • 동대문역사관-동대문운동장기념관(한양도성박물관 운영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사전절차

1)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, ..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나. 관련 방침

1) 첨단 기술 전시공간 조성계획(행정1부시장 제67호, '23.4.10.)

2)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(7차)(재산관리과-2816, '23.3.9.)

-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의 35%~40% 감면 추진 요청

다 . 예산조치 : 2023년도 1차 추경 편성

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김미화(☎ 2133-2708)